



산별노조·지역지부·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

# 현장투표의 개표

## 선거사무 개요



현장투표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개표사무원 용 <개표사무안내서>는 별도 발행 배부될 예정입니다.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(개요)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. 전자투표개표 업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일괄 전자 집계 되므로 안내를 생략합니다.

## 개표 사전준비

-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
- 개표 운영계획 사전수립
- 개표 물품 준비

### 01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

#### 지역본부

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이름을 담은 공고문을 서식\_서식66~67호대로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11월 13일(월) 게시하고 이를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합니다.

- **지역본부별 1개 개표소 설치 원칙** : 도서·벽지 등 투표함의 이송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표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개표분소 설치 여부는 지역본부선관위가 결정하되,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연장투표 대비 사전 조치** : 전국 전체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 과반 미달로 전국 또는 특정 지역의 연장투표 실시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마지막 날인 11/27(월) 17시까지 의결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 지역본부는 미리 마련해 둔 비상연락망으로 11/27(월) 개표 취소를 공지하고 곧바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할 연장투표 공고문\_서식62호를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하고,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연장투표일 마지막 날로 현장투표 개표일시장소를 정해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합니다.

↳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11/27(월) 16시 현장투표율 점검과 전자투표율을 관리하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.

#### 단위조직

지역본부가 배포한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문 파일의 게시판 출력 부착,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, SNS 및 문자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.

## 02 개표 운영계획 사전수립

<b>지역본부</b>	산별노조(연맹) 지역조직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의 개표사무원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할 업무를 미리 배정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.
<b>접수부</b>	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의 이상 유무, 누락 등 확인 → 투표함과 투표관리봉투를 세트로 묶어 적재
<b>개함부</b>	투표함을 열고 오·훼손 용지와 정상 투표용지를 각각 분류해 묶음
<b>분류부</b>	정상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용지를 별도 분류
<b>심사부</b>	후보별 분류된 정상투표용지 확인 / 미분류 투표용지 및 훼손용지 유·무효 구분과 후보별 분류
<b>검열집계부</b>	지역본부선관위 주관 하에 분류결과 검열과 집계 / 투표소별 집계 및 개표 상황표 작성
<b>정리부</b>	선거관리시스템에 개표상황표 입력 투표용지 분류 <유효표(후보별), 무효표(전체)> / 모든 선거관계서류 밀봉 후 선관위 서명

## 03 개표물품 사전준비

<b>지역본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수기 대여 국가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계수기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.</li> <li>• 개표소 내 공간확보 및 물품준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표소 내에 개표 참관인석과 관람인석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.</li> <li>- 개표 시 필요한 물품(필기구, 바구니, 계산기, 복사기, 투표용지를 묶을 고무 밴드 등)을 구비해 둡니다.</li> <li>- 개표소 출입자(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, 개표사무원, 개표참관인)용 패찰_서식69호를 준비합니다.</li> <li>- 개표집계 용 PC·프린터 준비 : 관할 지역 투표구 규모를 고려하여 여러 대 설치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## 개표 업무

- 개표 개시
- 개표 각 단계별 유의사항(개요)
- 개표결과 보고와 당선자 공고

### 04 개표개시

#### 지역본부

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개시 공표 이후에 개표소별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투표함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**전체 투표소의 절반(1/2)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** 있습니다.  
개표 순서는 투표함의 도착 순서에 따릅니다.

### 05 개표의 각 단계별 유의사항(개요)

#### 지역본부

각 단계별 세부 개표 절차는 별도 배포하는 <개표사무안내서>를 참고합니다. 아래는 미리 숙지해둬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유의사항만 안내드립니다.

#### 투표함 봉쇄·봉인 흠결 시

- 일일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상황을 확인합니다.
- 투표함 봉쇄·봉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, 즉시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, 투표함 유·무효 및 개표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단,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투표함 유·무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.

#### 투표관계서류 이상 시

- 투표관계서류를 가져오지 않거나,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투표함을 별도 장소에 대기시키고 투표사무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후,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개표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.

##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꺼내 정리하는 방법

- 접혀 있는 투표용지가 없도록 한 장씩 펼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.
- 투표용지 정리가 끝나면 주변에 누락된 투표용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,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등 오·훼손 투표용지는 따로 모아서 묶습니다.

## 유효표의 기준

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.

-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호란, 후보자 성명란에도 기표한 것
-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은 것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것
- 투표용지 일부가 찢어졌거나, 찢어져 소실됐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후보자 모두의 기표란을 확인할 수 있는 것
- 두 후보자 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 (후보자 란이란 기호란, 성명란, 기표란을 모두 포함함)
- 투표인이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○표 하였다가 착오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겹쳐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
- 투표인이 지지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필기구로 문자를 기재한 경우.

※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.

## 무효표의 기준

-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
- 테두리선에 맞물려 기표하여 어느 후보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
- 투표소에서 안내·제공된 투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경우

※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.

## 06 개표결과의 보고

### 지역본부

- 모든 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상황표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개표 완료를 보고합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검토 후 출력이 승인되면 선거관리시스템에서 개표록과 집계록을 출력합니다. 출력된 개표록과 집계록에 이상이 없는지 재차 확인 후 지역본부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. 만약, 서명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.
- 지역본부 선관위원의 서명 후 완성된 개표록·집계록은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전달해야 합니다.

## 07 당선자 결정 공고

### 민주노총

-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지역본부 현장투표 개표결과와 전자투표 개표결과를 합산한 각 선거구 별 전체 투표 결과를 각 선거구에 통보합니다.
-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의 선거위는 당선자 결정 공고문\_서식77호 을 선거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산별노조(연맹)에 당선자 결정 공고문 파일을 배포합니다.

### 산별노조 (연맹)와 지역본부

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.

### 단위조직

게시판 출력 부착,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, 문자·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.